



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 CARE SUBSIDY PROGRAMS (CCSP)

CCSP 신청
CCSP Application

날짜: _____

_____ 부모/보호자

_____ 사례 번호

_____ 접는 곳

신청인께,

탁아서비스 보조금에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본 신청서를 처리하여 귀하의 수혜자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 CCCP 신청서/ (WorkFirst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아동양육신청서를 기입해야 함);
- 지난 3개월간의 가족소득 증빙서류 제출(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아동 양육비 지불 명세서, 사회보장금, 생계보조비(SSI) 및 가족이 받는 기타 소득 명세서). 본인의 고용 계획 포함 주정부로부터 받는 현금보조금(TANF)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롭게 취업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채용 일자, 급여(시급, 월급 등), 그리고 앞으로의 근무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 저희는 귀하의 구두 진술이나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인일 60일 이내에 반드시 급여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내 법원명령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 지급한 아동양육비 명세서.

귀하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자녀의 발달이 개월 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동이 학교 진학을 위해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핫라인 (1-800-322-2588)에 전화하거나 부모 도움 123 웹사이트(<http://www.parenthelp123.org/child-development/help-me-grow-washington>)에 방문하여 무료 아동 발달 스크리닝 질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인 상해를 입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상태로 내몰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발견하신다면 DCYF 무료 전화 1-866-END-HARM (1-866-363-4276)로 연락하십시오.

보유 자산

\$1,000,000.00 이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보유 자산에는 현금, 은행 계좌, 주식/채권, 투자 계정, 투자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보호자의 활동 일정

신청인		배우자 또는 다른 한쪽 부모/보호자
활동(직업, 학교, WORKFIRST 활동) 활동시간을 오전/오후로 표시해 주십시오.		활동(직업, 학교, WORKFIRST 활동) 활동시간을 오전/오후로 표시해 주십시오.
월요일	직장에서의 근무 활동 일정 학교, WORKFIRST 활동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근무 활동 일정 학교, WORKFIRST 활동은 무엇입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택아서비스는 며칠부터 시작합니까?

신청인: 편도로 택아서비스 제공자에서 귀하의 활동(직장, 학교 등) 장소까지 가는데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다른 한쪽 부모/보호자: 편도로 택아서비스 제공자에서 귀하의 활동(직장, 학교 등) 장소까지 가는데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자녀의 활동 일정 추가 자녀의 경우 별도의 용지에 정보를 적어 제출하십시오.

자녀의 이름	학교 일정 (정확한 요일과 시간)	택아서비스 일정 (정확한 요일과 시간)

귀하의 취학 연령 자녀에게 학교 수업 시나 여름 방학 중에 택아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장애아동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택아비 정보는 허가 담당자(Authorizing Worker)에게 연락하십시오.

심의회 권리 WAC 110-15-0280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P O Box 42489, Olympia, WA 98507-2489로 연락해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 조치 유효일 전에 또는 이 조치 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10일 전에 심의회를 신청하거나
-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심의회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귀하가 선택한 사람을 대동해 귀하를 대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무료 법적 조언이나 대변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양식에 본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본인이 아는 바를 기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양식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워싱턴주법에서 규정한대로 벌칙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RCW 74.08.055)

부모/법적보호자 서명	날짜	다른 한쪽 부모/법적보호자 서명	날짜
-------------	----	-------------------	----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종이나 피부 색,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연령, 혼인 유무, 퇴역군인, 베트남전 참전자 지위,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